



제418회 국회(정기회)
제1차 환경노동위원회

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< 미성년자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정비 >

■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2201997호)

2024. 9.

환 경 노 동 위 원 회

전문위원 손을춘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개정안의 주요내용	2
2. 검토의견	3

I. 제안경위

2024년 7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,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,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.

Ⅲ. 검토의견

1. 개정안의 주요내용

개정안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(안 제3조의2제2항), 미성년자인 합격자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(안 제3조 단서 신설).

[표]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자격)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. <단서 신설>	제3조(자격) ----- ----- ----- 다만,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합격자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.
제3조의2(공인노무사 자격시험) ① (생략) ②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 ③ ~ ⑤ (생략)	제3조의2(공인노무사 자격시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제4조 각 호 (제1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----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나. 검토의견

현행 「공인노무사법」은 제4조(결격사유)에서 ‘미성년자’를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¹⁾, 제3조의2(공인노무사 자격시험)제2항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를 불허하고 있음.

또한, 제3조의2제3항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,²⁾ 제3조(자격)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여,³⁾ 미성년자

1) 「공인노무사법」 제4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3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사람

4.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8.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

2) 「공인노무사법」 제3조의2(공인노무사 자격시험) 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, 제1차시험·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②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, 시험과목, 시험방법, 자격증 교부,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,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) 「공인노무사법」 제3조(자격)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.

가 응시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종국적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개정안은 현행 「공인노무사법」의 연령을 이유로 한 자격시험 응시 제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미성년자에게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, 연령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는 측면에 의의가 있음.

특히 개정안은 제3조의2(공인노무사 자격시험)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한에서는 미성년자를 제외하는 한편, 제3조(자격) 규정에서는 ‘미성년자인 합격자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.’라고 규정하여, 미성년자에 대한 시험 기회 제공을 통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, 전문자격업무의 중요성과 거래 상대방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유사 입법례로, 세무사⁴⁾, 관세사⁵⁾, 감정평가사⁶⁾ 등 다른 전문자격을

4) 「세무사법」 제4조(세무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
2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사람

4.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~10. (생략)

제5조(세무사 자격시험)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5) 「관세사법」 제5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
제6조(관세사 시험) ②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5조 각 호(제1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규율하는 법률에서도 자격시험에서는 미성년자의 응시를 제한하지 않으며, 자격 취득 이후 등록과정에서는 결격사유를 유지하고 있음.

문 의 처
02)6788-5535

6) 「감정평가사법」 제12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.

1. 삭제 <2021. 7. 20.> :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이 제1호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삭제됨.

제14조(감정평가사시험) ②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제18조(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.

1.~4. (생략)

5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